

재고자산평가 조정명세서							
①과세기간	년 월 일부터		상 호		③성 명		
	년 월 일까지	②사업자등록번호					
1. 재고자산평가방법 검토							
④자 산 별	⑤평가방법 신고연월일		⑥신고방법		⑦평가방법	⑧비 고	
2. 평가조정계산							
⑨과 목							
⑩품 명							
⑪규 격							
⑫단 위							
⑬수 량							
본 인		⑭단 가					
계상액		⑮금 액					
조 정 계 산 금 액	신고	<16>단가					
	방법	<17>금액					
	선입	<18>단가					
	선출 법	<19>금액					
<20>조정액(<17> 또는<17>과 <19> 중 큰 금액 - ⑮)							

210mm×297mm(신문용지 54g/m²(재활용품))

작성 방법

1. 재고자산 평가방법 검토의 경우, ⑥신고방법란은 본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기재하고, ⑦평가방법란은 본인이 실제로 평가한 방법을 기재합니다.
2. "2. 평가조정계산"의 경우, ⑨과목란 및 ⑩품명란은 자산별로 기재하고, ⑪규격란 및 ⑫단위란은 재고자산수불부상의 내용에 의하여 기재합니다.
3. ⑮금액은 결산서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.
4.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별로 신고한 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을 계산하여 <16>·<18>단가란과 <17>·<19>금액란을 기재합니다.
5. <20>조정액란은 자산별로 <17>신고방법에 의한 금액(신고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<17>신고방법에 의한 금액과 <19>선입선출법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)과 <15>금액과의 차액을 기재하되, <20>의 금액이 양수(+)인 경우에는 그 금액 만큼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, 음수(-)인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.
6. 평가손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품목은 합계액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, 품목별 계산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·비치하고, 과목별 자산별 합계액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.